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세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무면허로 주류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벌금상당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매 유형 중 하나인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바, 주류에 대한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로 인한 유통거래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류·밀술·술덧을 무면허로 제조한 경우 또는 무면허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 2) 주류 수출업면허 없이 수출행위를 한 경우
-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주류별 제조, 도매, 소매, 수출입 또는 중개한 양	탁주	위스키 및 브랜드	그 밖의 주류
50ℓ 이하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ℓ 초과 100ℓ 이하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ℓ 초과 500ℓ 이하	200만원	700만원	400만원
500ℓ 초과 1,000ℓ 이하	300만원	1천만원	600만원
1,000ℓ 초과 3,000ℓ 이하	500만원	2천만원	1천만원
3,000ℓ 초과 5,000ℓ 이하	1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5,000ℓ 초과 10,000ℓ 이하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0,000ℓ 초과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주류 또는 해외에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2) 주류 수출입업면허 없이 수출입행위를 한 경우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다. 주류 소매업면허(의제 주류 판매업면허를 포함한다) 없이 소매행
위를 한 경우: 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